

2020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학생 모집

재외동포 증명 서류 안내

1. 재외국민(한국국적)

-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제출

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시고,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는 언제든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영사과 (0207 227 55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외국국적동포

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외국국적동포 중 직계존속의 일방이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을 재외동포로 인정합니다. 따라서 직계존속 중 한 분이 한국국적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

외국국적동포인 것을 증명하시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) 부모님이 영주권자이고, 지원자가 시민권자인 경우

- 부모님 한국여권 사본 및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(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제출 (예: 지원자 아버지의 한국여권 사본 및 지원자의 Birth Certificate)

2) 부모님이 시민권자이고, 지원자도 시민권자인 경우

- 부모님의 한국국적 보유사실증명서(제적등본, 주민등록말소등본, 국적이탈 사실증명서 등) 및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(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제출

참고로,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셔서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일주일, 방문신청은 3-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영사과 (0207 227 55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